발행·편집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 440-2221, FAX 440-2598)

화 천 군 군 보

www.ihc.go.kr

제292호 2020년 12월 31일

선람	기관의 장

공 고 문

1.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	3
2.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4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15
5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6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1
7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8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56
9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58
10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68
11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5
12	화천힐링센터 운영 조례	---	89
13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	94
14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97
15	화천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108

16.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121
17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 139
18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53
19 화천군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156
20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61
21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67
22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169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35호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장 관광정책과 소관

제1조(「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탁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화천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의 개정)

화천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 문화체육과 소관

제5조(「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의 개정)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장 지역경제과 소관

제7조(「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8조(「화천군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천군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장 관광정책과 소관

제1조(「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협약체결 등) ---------- ---------- ---------- 체결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조(「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와 위탁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체결) ① ----------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6조(계약 체결) ① ---------- 체결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화천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생 략)	---------- 체결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2장 문화체육과 소관

제5조(「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③(생 략)	제27조(협약체결 등) ① ---------- 체결하여야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제6조(「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위탁절차 등) ① ~ ③(생 략) ④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절차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경제과 소관

제7조(「화천군 광덕산 조경철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 ----------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8조(「화천군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36호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91명”을 “49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78명”을 “484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9%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24% 이내	8% 이상	1.1%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497	497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76	476				
4급	2	1		1		
4~5급	3	2				1
5급	22	10	2	5	1	4
6급 이하 소계	444	444				
전문경력관 소계	5	5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1	-	-	-	-
연구직 계	2	2				
연구관	-	-	-	-	-	-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7	17				
지도관	1			1		
지도사	16	1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화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49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478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497명--------- ----------. 1. ---------- 484명 2. (현행과 같음)

<서식 정비>

현 행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24% 이내	8% 이상	1%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497	497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76	476				
4급	2	1		1		
4~5급	3	2				1
5급	22	10	2	5	1	4
6급 이하 소계	444	444				
전문경력관 소계	5	5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9%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24% 이내	8% 이상	1.1%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497	497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76	476				
4급	2	1		1		
4~5급	3	2				1
5급	22	10	2	5	1	4
6급 이하 소계	444	444				
전문경력관 소계	5	5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37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문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금 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화천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지원)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자문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 등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화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 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해당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민간위탁 사무와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9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

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의회 의원은 1명 이상으로 하며, 군 공무원은 전체 위

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질병 또 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21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7. 시설의 안전관리

8. 지도·점검, 성과평가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다시 위탁 등을 할 수 없다.

제19조(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판단 전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제26조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1조(운영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4.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 제출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천군 평화통일 교육·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화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화천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화천군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화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을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로 한다.

제25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26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⑪ 화천군 세계평화의 종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화천군 디엠제트(DMZ) 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화천군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화천군 산천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화천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⑮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⑯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25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⑰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⑱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⑲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⑳ 화천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㉑ 화천군 야영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㉒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㉓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35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㉔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㉕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㉖ 화천동구래마을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㉗ 화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㉘ 화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㉙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㉚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㉛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㉜ 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㉝ 화천군 창조인재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㉞ 화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㉟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㊱ 화천산약초마을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 위원회”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0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34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㊲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39호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양성평등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수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를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17조 중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사업"을 "사업: 양성평등행사 참여, 양성평등 실현 홍보

교육・홍보물 제작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을 “사업: 4대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홍보, 여성 인권보호 교육 및 권익증진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을 “사업: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을 “사업: 여성 능력개발 교육, 여성의 역량강화교육, 양성 지도력 함양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원”을 “지원: 저출산 극복지원 행사, 저출산 극복지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한다.

제29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 ---------- ----------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 ----------.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 ---------- ---- 평가하여 ---------- ---------- ----------.
제16조(비영리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생 략)	제16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제17조(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화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양성평등	제17조(설치) ---------- ---------- ------ 양성평등기금--------- ---------- ---------- ----------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8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제28조(용도) ---------- ----------.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1. ---------- 사업: 양성평등행사 참여, 양성평등 실현 홍보교육·홍보물 제작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사업
2.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 사업: 4대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홍보, 여성 인권보호 교육 및 권익증진교육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	3. ---------- 사업: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교육 활동
4.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4. ---------- 사업: 여성 능력개발 교육, 여성의 역량 강화교육, 양성 지도력 함양교육
5.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5. ---------- 지원: 저출산 극복지원 행사, 저출산 극복지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2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존속기한) ---------- -- 2025년 12월 31일---------- ---------- ---------- ---------- ----------.
제30조(관리·운용) ①·② (생략) ③ 기금의 운용자금은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화천군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한다. ④ (생 략)	제30조(관리·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라 ---------- ---------- ---------- ----------. ④ (현행과 같음)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규칙 제1169호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금의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를 ““군””으로, “공익단체”를 “민간단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지원신청서”를 “공모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단체 사업자등록증

5. 단체 임명장

6. 단체 회원명부

제5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체회원 5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2. 단체회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5% 이상으로 한다.

3. 단체회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

4. 단체회원 1,000명 이상: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양성평등기금 공모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고유번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폰)		전자메일주소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화천군 양성평등기금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모신청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회의록 1부.
3.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1부.
4.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단체 임명장 1부.
6. 단체 회원명부 1부.

본인은 이 신청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음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화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 ---------- ---------- ---------- ---------- “군” ------ ---------- -------- 민간단체-----.
제3조(지원신청) 화천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 ---------- ---------- 공모 신청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단체 사업자등록증
<신 설>	5. 단체 임명장
<신 설>	6. 단체 회원명부
제5조(기금의 지원)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지원) ---------- ---------- ---------- ----------.

<신 설>	1. 단체회원 5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 설>	2. 단체회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5% 이상으로 한다.
<신 설>	3. 단체회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 설>	4. 단체회원 1,000명 이상: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 이상으로 한다.

<서식 정비>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총사업비		총사업비 구 성	보조금	
			자부담	
단 체 연락처	주 소			
	전 화		FAX	
	E-mail			
	실무자	직 위		성 명

※ 첨부서류
1. 지원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법인)명의 통장사본 1부.

화천군양성평등기본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양성평등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 양성평등기금 공모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고유번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폰)		전자메일주소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천군 양성평등기금 공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모신청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회의록 1부.
3.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1부.
4.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단체 임명장 1부.
6. 단체 회원명부 1부.

본인은 이 신청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음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40호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명"을 "15명"으로 하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

획감사실장・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획감사실장・주민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 “학식”을 “관한 학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

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종전의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천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잔임기간”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제10조,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중 “회의참석 위원에 대하여”를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로, “「화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를 “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중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필요----------.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생 략) ② 소속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3조(구성) ① ---------- 15명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기획감사실장・주민복지과장----------. ④ ---------- 사람으로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관한 학식----------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 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

	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생 략)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제3항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⑤ ----------1 이상-------.
<신 설>	⑥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기능) ①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아동복지법」---------- ---------- ----------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천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생략)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② ---------- 새로 위촉

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된 위원---------- -- 임기의 남은 기간---------- ----------.
제7조(간사) ① (생 략)	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화천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 따라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회의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 「화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 ---------- ---------- ---------- ---------- ---------- ---------- 그 밖의 -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회의의 비공개) --------- ---------- -- 따라 ---------- ---------- 법령에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따른다.
제11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41호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거주하며, 종합문화센터 내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을 “거주하는”으로, “지원대상 지역은 [별표1]과 같다”를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매분기 첫 달 1일(이하 “지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종합문화센터 내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지원대상 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2조(지원대상자) ---------- ---------- ---------- ---------- ---------- 거주하는 ------- ---------- ---------- ---------- 한다.

<서식정비>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목욕비 지원 대상지역 읍면별 / 대상 지역 / 비고 화천읍 / 25개리 전역 / 하남면 / 12개리 전역 /	<삭 제>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42호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천군 실버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화천군 실버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복지센터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96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교양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사업
3. 노인의 소득보장·재가복지 및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프로그램실 및 다목적실

4. 건강증진실

5. 체력단련실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대상자)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목적실 등을 복지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인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료 등) ①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센터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센터의 시설물 및 기구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지센터 사용료 등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이용료	수강료	1개월	10,000	
	식당	중식/1식	2,000	
	건강증진실		무료	
	체력단련실		무료	
사용료	다목적실	2시간	20,000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20% 가산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 가산

[별표 2]

복지센터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시설구분	대 상 자	감면기준
수강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무료
식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료의 50%
다목적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무료
	법인 또는 단체가 노인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사용료의 50%

[별표 3]

복지센터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7조제3항 관련)

반 환 기 준		반환금액
이용료	프로그램 시작일 1일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사용료	복지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는 경우	전액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신청을 한 경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의 90%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단체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성명(대표자)</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 rowspan="2">사용시설</td><td>기본시설</td><td colspan="3"></td></tr>
<tr><td>부대시설</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용기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용목적</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용인원</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td><td colspan="3"></td></tr>
</table>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서 (제8조제3항 관련)

허 가 번 호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시설	기 본 시 설			
	부 대 시 설	□ 조 명 □ 방송시설 □ 냉·난방 □ 기타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				
사 용 료		금 원		
허 가 조 건		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 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 복지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할 수 있습니다.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대장 (제8조제3항 관련)

허가 번호	허 가 연월일	사용자 인적사항			허 가 내 용			비고
		성 명 (단체명)	주 소	연락처	시설명	사용기간	사용목적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43호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자”란 제1호의 장애인에게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복지센터는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8길 20-19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의 자립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취미활동 및 정보지원에 관한 업무

4.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식당

2. 프로그램실 및 다목적 강당

3. 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

4. 장애인전용 목욕탕

5. 점자도서관

6.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이용대상)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장애인전용 시설(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 장애인전용 목욕탕)은 장애인과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2.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3. 지역주민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센터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

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 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① 복지센터의 시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센터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제8조제1항관련)

가.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다목적 강당	평일주간 1회 1시간	15,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 매1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식 당	평일주간 1회 1시간	10,000	
프로그램실	평일주간 1회 1시간	10,000	
장애인전용 체력단련실	-	무료	
점자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무료	
◦ 장애인단체가 사용할 때 또는 공익상 사용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장애인전용 목욕탕 사용료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장애인	일반 장애인	2,000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학생 :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만7세~18세에 해당하는 사람 ◦ 경로우대자 : 65세이상인 사람 ◦ 보호자 : 동반1명 한정
	차상위수급자,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학생	1,000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무료	
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무료	

[별표 2]

장애인복지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전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	전액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그날 반환 요청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이후 반환 요청	전액 반환하지 않음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7조제2항관련)

시설구분		참가인원	명
사용목적			
사용내역			
참가범위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 성 명		사용자 주 소	
사용료 산출액	원		

「화천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주 소 :

화천군수 귀하

2020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2.24.)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규칙 제1170호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을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으로써”를 “무주택자로 자녀가 2

명 이상인 공무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순위: 1순위 외 무주택 공무원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 규정"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자는 별지서식 제1호"를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하되"를 "하되,"로, "공무원을"을 "공무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로써"를 "사람으로써"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일안에 별지서식 제2호로 사용허가신청서를"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관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로, "별지서식 제3호로"를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6조 규정"을 "제6조"로, "입주일로 부터"를 "입주일로부터"로, "한해 1회 연장 신청할"을 "한정하여 한 차례 연장신청 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자는 무주택자로서 사용허가조건을준수한 자만"을 "무주택자로서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연장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연장 신청"을 "연장신청"으로, "자는 별지서식 제4호"

를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관리· 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①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재산 평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동안 매년 결정하고,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2.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견본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로, “호에 의한”을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1항제1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서식 제5호에 의한 퇴거신청후”를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 작성 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자.”를 “사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제10조제1항”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별지서식 제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접수번호</td><td></td><td colspan="6">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td></tr>
<tr><td>소속</td><td></td><td>직급</td><td></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입주희망주택</td><td colspan="3">①독신자 ②가족(상리・대양・화남빌라)</td><td colspan="2">입주희망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6">입주자격조건 해당란에 ○표</td><td rowspan="3">가족주택</td><td>제1순위</td><td colspan="5">무주택자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td></tr>
<tr><td>제2순위</td><td colspan="5">무주택자로서 1순위 외 공무원의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td></tr>
<tr><td>제3순위</td><td colspan="5">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td></tr>
<tr><td rowspan="3">독신자주택</td><td>제1순위</td><td colspan="5">5급 이상의 공무원(5급 직무대리포함). 다만, 관사가 있는 기관 근무자는 제외한다.</td></tr>
<tr><td>제2순위</td><td colspan="5">1순위 외 무주택 공무원</td></tr>
<tr><td>제3순위</td><td colspan="5">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td></tr>
<tr><td colspan="3">주택 유・무 표시</td><td colspan="5">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td></tr>
<tr><td colspan="3">① 유 ② 무</td><td colspan="5">세대원 성명 기재 :</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8">※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화천군 공무원 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필요----------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입주대상자의 선정순위 등) ① 조례 제3조 중 가족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단, 입주세대원 중 자녀는 소득이 없는 만2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입주대상자의 선정순위 등) ① ---------- ---------- ---- 따른다. ---------- ---------.
1. 제1순위: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으로써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1. ------ 무주택자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3순위: 기타 사정으로 입주	3. ------ 그 밖의 ---------

를 희망하는 공무원	----------
② 조례 제3조 중 독신자 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② ---------- ---------- ---- 따른다.
1. 제1순위: 5급 이상의 공무원(5급 직무대리포함). 단, 관사가 있는 기관 근무자는 제외한다.	1. ---------- ----------. 다만--- ---------- --.
2. 제2순위: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독신자)	2. 제2순위: 1순위 외 무주택 공무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입주자 모집)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는 분기말(전년도 12월, 3월, 6월, 9월) 15일 이전에 다음 분기 내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전 공무원이 열람하게 하거나 게시의 방법으로 5일 이상 공지해야 한다.	제4조(입주자 모집) -- 제4조제1항----------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입주신청)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서식 제1호에 따른 공무원주택 입주	제5조(입주신청) -- 제4조제2항- ---------- -------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 유·무 확인은 입주신청서를 참고하여 공무원 주택 관리부서에서 관련 공부를 확인한다.	----------. ---------- ---------- ---------- ----------.
제6조(입주자의 선정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주신청의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의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제3조 규정에 따른 입주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신청자 순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입주자의 선정방법) ① --- ---------- ---------- ---------- 제3조----------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무원주택의 입주자 결정) ① 입주신청자 순위명부에 의해 입주자를 결정 하되 동일 순위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원이 많은 공무원을 우선하며, 입주 세대원의 수가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7조(공무원주택의 입주자 결정) ① ---------- 따라 ---------- 하되, ---------- ---------- ------- 공무원이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입주세대원 중 1년 이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자로써 행방불명자, 장기 해외거주자, 의무복	④ ---------- ---------- ----- 사람으로써 ---------- ----------

무자, 장기 수감자, 장기 입원자 등은 전세대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
제8조(사용허가) ① 입주자는 군수로부터 입주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안에 별지서식 제2호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별지서식 제3호로 사용허가 조건을 붙여 사용허가 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 ---------- ------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관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 별지 제3호서식의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신청자 순위명부 중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를 선정하고, 제1항의 절차로 사용허가 한다.	② ---------- 사람은 ---------- ---------- ---------- ---------- ---------- ---------.
제9조(입주기간 등) 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입주일로 부터 3년으로 하되, 가족주택 거주자에 한해 1회 연장 신청할 수 있다.단,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신청이 가능한 자는 무주택자로서 사용허가조건을준수한 자만 할 수 있	제9조(입주기간 등) ① -- 제6조 ---------- 입주일로부터 ---------- 한정하여 한 차례 연장신청 할 ----------. 다만---------- --- 무주택자로서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연장신청

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제4호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연장신청 ---------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중 3자녀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연소 자녀가 만22세가 되는 해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주택의 관리) ① (생 략)	제10조(주택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자치관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비는 별표 1의 항목범위에서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자치관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는 조례 및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정관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관리・운영----------.
제11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재산평정가격의 1,	제11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재산 평정가격의 1,

0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재산평정가격 결정은 주택소재지 및 전용면적별로 별표 2의 견본주택에 대하여 3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000분의 20으로 하고, 재산 평정가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동안 매년 결정하고,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2.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견본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에 의하여 매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③ 삭 제	② ---------- 따라 ----------.
	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연체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2조(연체료) 제11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 호의 구분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하자보수 책임범위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범위 등) ① ---------- ----------.
1. 입주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모성 시설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써 별표3의 시설물	나. ---------- ---------- 별표 3------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과실에 의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 사용료 반환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 ---------- ----------.
제14조(퇴거절차)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주택에서 퇴거하고	제14조(퇴거절차) ---------- --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자 하는자는 별지서식 제5호에 의한 퇴거신청후 주택의 보존·관리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군수는 확인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 승인을 보류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퇴거신청서 작성 후 ----------.
1. 개인 사정으로 공무원주택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퇴거 신청자는 퇴거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와 입주자 부담금, 각종 제세공과금은 퇴거 신청자가 부담한다.	1. ---------- 사람. ----------.
2.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거하는 자. 단 이 경우 군수는 2개월의 기간 내에서 퇴거 예정일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2. --- 제10조제1항---------- 사람. 다만, ----------.

<서식 정비>

현 행

【별지서식 제1호】

접수번호		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입주희망주택	①독신자 ②가족(상리·대양·화남빌라)			입주희망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격조건해당란에 O표	가족주택	제1순위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제2순위	무주택자로서 1순위 외 공무원의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제3순위	기타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독신자주택	제1순위	5급 이상의 공무원(5급 직무대리포함). 단, 관사가 있는 기관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2순위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제3순위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주택 유·무 표시	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						
① 유 ② 무	세대원 성명 기재 :						

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공무원주택 (신규) 입주신청서**(제5조 관련)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입주희망주택	①독신자 ②가족(상리·대양·화남빌라)			입주희망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격조건해당란에 O표	가족주택	제1순위	무주택자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으로서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제2순위	무주택자로서 1순위 외 공무원의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				
		제3순위	그 밖의 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독신자주택	제1순위	5급 이상의 공무원(5급 직무대리포함). 다만, 관사가 있는 기관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2순위	1순위 외 무주택 공무원				
		제3순위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공무원				
주택 유·무 표시	입주희망 세대원 수 : 명						
① 유 ② 무	세대원 성명 기재 :						

위와 같이 화천군공무원주택(독신자주택, 가족주택)입주를 신청하며,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입주를 포기·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화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입주세대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44호

화천힐링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 대표음식 브랜드 개발 및 안정적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소득기반사업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화천힐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천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라 한다)란 힐링센터 내 교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힐링센터를 관리하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힐링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화천힐링센터”라 한다.

② 위치는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53-2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힐링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대표 음식 개발 및 홍보
2. 청년 창업 및 청소년들의 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익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사계관광 및 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
5.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 유치 및 운영
6. 그 밖에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절차) ① 힐링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기간 동안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화천군 미래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힐링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힐링센터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1회 정기적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힐링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힐링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천힐링센터 위탁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단체명</td><td></td><td>대표자명</td><td></td></tr>
<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사업실적</td><td colspan="4"></td></tr>
<tr><td>신청목적</td><td colspan="4"></td></tr>
<tr><td>위탁시설</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화천힐링센터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화천힐링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천 군 수 귀 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4">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등록단체 및 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td></tr>
</table>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45호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4조(재정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화천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46호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승로 2길”을 “상승로2길”로, “이하“박물관””을 “이하 “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람료”라 함은”을 ““관람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6호 내지”를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6호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18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2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1]에 의하여”를 “[별표 1]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2호) 중 “12세 이하”를 “13세 미만”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6호)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를 “제22조에 따른 선거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받고자”를 “감면 받고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부합되는지”를 “부합하는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를 “체결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성명 및 주소,”를 “성명, 주소 및”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내며, 1회에 한하여”를 “이내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3조제2항 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5조 중 “대하여는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2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2길 21 일원에 조성한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상승로2길 ---------- ----------이하 “박물관”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다음과 ---------.
1. “전시물”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1. ------이란 ---------- ---------- ----------.
2.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6호 내지 제10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제6호부터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6. ----------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미만----------.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 13세 미만----------.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관리) ① ~ ③ (생략)	제5조(운영·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커피박물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5. ------ 군수----------
③ 군수는 박물관의 대청소, 전시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도 ----------.
제8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	제8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

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하여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별표 1]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9조(관람료 면제 및 감면) ①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 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생 략)	9.·10.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2. 12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안내인	10. 13세 미만---------- ---------- -- 따른 ----------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 8. (생 략)	11. ~ 15.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3. ---------- ---------- -------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 ---------- ----------(해당 ---------- ----------

②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 감면 받고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의 제한) ---------- 대해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 각 호의 어느 ----------.
제16조(수탁자 및 사용수익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및 사용수익자 선정)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 부합하는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 체결) ① ---------- --- 체결하여야 ---------- ----------.
② 위탁계약서에는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대상 사무, 내용, 기간, 조건, 예산지원액, 위탁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탁 및 사용기간은 5년 이내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② ---------- ------- 성명, 주소 및 ------- ---------- ---------- ---------- ---------- -------. ---------- 이내이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
제22조(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박물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커피박물관의 위탁자 또는 사용수익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자체운영규정) --------- ---------- 필요------- ---------- ----------. - ---------- ---------- 받아야 -----.
제23조(손해배상 등) ① (생 략)	제23조(손해배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	② ---------- ----------

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한 후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대해서----------.
제25조(준용) 산천어커피박물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준용) ----------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 필요----------.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

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47호

화천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설치 심의위원회 운영,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인가·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화천군을 말한다.

6. “설치 인가·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인가·허가 등 신청) 설치주체는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

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중 동상 등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군민 공감도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설치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이 있을 것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조화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 독창성 및 상징성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설치 규모의 적정성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8조(설치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을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 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3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의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의와 실행 심의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인가·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총괄부서에 요

청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청자	성명(단체명)		연락처	
	주 소			
설치 대상	사 업 명			
	설치위치			
	규 모			

「화천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화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설치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제작작가 경력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1. 사 업 명 :

2. 설치기간 :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별지작성 가능)

라. 재 질 :

4. 작품설명 :

5. 제 작 자 :

6.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

7. 사 업 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

8. 그 밖의 사항

(작품의 보수·이전·교체·해체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상세내역

항 목	세 부 계 획	비 고
관리자	가. 설치주체 : (연락처) 나. 주관부서 : (연락처) 다. 작가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별지작성 가능
조형물 등 보수 계획	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년/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	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주관부서 검토의견 포함 (작품보수, 이전·교체·철거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별지작성 가능

상기 사후관리 계획서는 「화천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설치주체 : (인, 서명)

주관부서장 : (인, 서명)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품명칭		설치일자	
설치위치 (공공시설명)		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		형 상 (재 질)	
설치주체	(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가현황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기관		생애주기 (존치기한)	
관리방법	(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내용 등 포함)		
설치 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공공조형물 위치(배치)도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5″× 7″)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48호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및”을 “「주차장법」,”으로, “시행령,”을 “시행령 및”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조사: 주간·야간주차, 적법·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실태조사원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합산하여"를 "합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유없이"를 "이유 없이"로, "합산하여"를 "합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시하여야"를 "보여 주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천시시이하"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천 시시 이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재래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를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한다)”를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약기간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계약기간에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 구역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미터미만”을 “6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호 중 “제1호 나목”을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2미터미”를 “12미터 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2미터이상”을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를 “군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부여하여야”를 “주어야”로 한다.

별표 5 비고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제3호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21조제1항 관련)”을 “(제2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 -------- 시행령 및 ----------.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조사: 주간·야간주차, 적법·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실태조사원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 ---------- ---------- ---------- ---------- ---. ---------- ---------- ----------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마을관리휴양지는 제외한다.	----------.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
1.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 합하여 ----------.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 이유 없이 ---------- 합하여 --------.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 ---------- 보여 주어야 --.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 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2.「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소유의 차량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1천시시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1천 시시 이하 ----------.
5. 승용차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5. ---------- 대해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의 상인 및 고객을 위한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재래시장 상점 이용증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
8.「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 대해서----------.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주차거부 금지) ---------- 사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유 없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④ ---------- 계약기간에 제3항에 따른 ----------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 범위----------.
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 ---------- 받아 -----.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2. ---------- 관할 구역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제10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미터 미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외주차장 : 제1호 나목과 같다.	2. ---------- 제1호나목----------.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대해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	4. ---------- 각 목----------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	가. ---------- 12미터 미----------

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나. ---------- 12미터 이상 ----------
제15조(노외주차장설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노외주차장설치 등) ---------- 대해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식별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 ---------- 쉬운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	제21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

준) ① (생 략)	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는 영 별표1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 할 수 없다.	② ---------- ---------- 별표 1---------- ---------- ----------.
제22조(과징금 처분) ①·② (생략)	제22조(과징금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 ---------- ---------- ---------- ------ 주어야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서식 정비>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별표 5]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별표 6]	[별표 6]
과징금 가감기준 (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과징금 가감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49호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

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지침”이란 건축물,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 기본방향)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군의 경관적 가치 향상, 쾌적한 지역 이미지 형성,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제안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제안의 내용

마. 제안 내용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계획을 적용·시행한 관련 자료

5. 그 밖에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제안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라. “랜드 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 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 스카이라인 및 야간경관 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하. 호수변 및 하천 경관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화천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 심의기준 수립) 군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다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강원도 경관형성 심의·운영 지침」의 심의기준을 따른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화천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구조 변경, 간판 정비사업
4. 경관형성 우수마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경관지원사업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후의 시뮬레이션
3. 사업계획 관련도서
4. 기대효과
5.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천군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이해관계인

2. 경관사업 추진지역 군의원

3. 경관업무 총괄부서 담당과장 및 경관사업 추진부서 담당 실·과장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한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④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 협의체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건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협의체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현장관리인·점유자·전세권자·사용자·임대차계약대상자 등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수목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3.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운영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5. 경관협정 이행계획
6. 기타 경관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운영회의 규약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운영회의 경관사업계획서
3. 경관사업과 관련한 재정운용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3. 사업계획 관련도서

4. 유지관리 계획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형성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다. 3층 이하의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계공모 등을 통하여 디자인이 결정된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4.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의 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24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화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경관분야 심의 신청 시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2. 「화천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화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화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6.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디자인계획

7.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제27조(수당과 여비) 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2.24.)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50호

화천군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영유아를 보호하며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6세 미만의 미취학 어린이를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이란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 및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와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운전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적극 권장 해야 한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군수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차량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51호

화천군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화천군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

및 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매립시설”이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재활용품 또는 혼합폐기물을 수선별 및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침출수처리시설” 이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정수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파쇄시설” 이란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가연성폐기물” 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차중량” 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화천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2. 위치: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799-13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쓰레기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4. 매립장 운영 및 유지보수

5. 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

6.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7.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따른 세입·세출 업무

8.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제6조(업무의 위탁)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자

②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폐기물 처리방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처리의 경우

2.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1일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장 가동을 중지한 경우

② 혼합폐기물은 재활용품 선별 후 소각 처리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우선 파쇄시설에서 파쇄한 후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 및 관내 군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①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차량은 사전에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출입등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의 제한) ① 군수는 시설물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군수가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화천군 관할구역 외 지역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규칙 제1171호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규칙은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 다량배출 사업장폐기물”을 “다만,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4조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을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

위반내용	제재사항	비고
○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준용	
○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은 쓰레기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 함수율이 높은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	○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 화천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 해당업체 30일간 반입금지	
○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침출수 노상방류, 비산, 세차미실시)	○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 시설물파손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해당차량 30일간 반입금지	

[비 고]

1. 위반차량적발시 차량번호 위주로 처분한다.
2. 반입금지기간은 적발일로부터 적용
3.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4.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최소반입금지 기간인 10일 이상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 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 이용) ---- 제8조에 따른 ----------. 다만,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제3조(손실보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단,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손실보상) -- 제9조제2항에 따른 ----------. 다만----------.
제4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반입의 제한) -- 제10조제1항에 따른 ----------.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는 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 2와 같다.	----------.

<서식정비>

현 행

[별표 1]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

위반내용	제재사항	비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준용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은 쓰레기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함수율이 높은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화천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업체 15일간 반입금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침출수 노상방류, 비산, 세차미실시)	◦해당차량 3일간 반입금지	
◦시설물파손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차량 15일간 반입금지	

[비 고]
1. 위반차량적발시 차량번호 위주로 처분한다
2. 반입금지기간은 적발일로부터 적용
3.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4.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최소반입금지 기간인 3일 이상을 적용한다.

개 정 안

[별표 1]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기간

위반내용	제재사항	비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준용	
◦사용자 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은 쓰레기 및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함수율이 높은 상태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화천군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업체 30일간 반입금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침출수 노상방류, 비산, 세차미실시)	◦해당차량 10일간 반입금지	
◦시설물파손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차량 30일간 반입금지	

[비 고]
1. 위반차량적발시 차량번호 위주로 처분한다
2. 반입금지기간은 적발일로부터 적용
3. 반입금지기간 일수산정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4.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최소반입금지 기간인 10일 이상을 적용한다.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규칙 제1172호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범위 및 한도액)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범위와 한도액 (제2조 관련)

담보명	보상범위	한도액
(1)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2)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3)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5)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6)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7)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8)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9)강도 상해후유장애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 유장애가 있는 경우	1,000만원
(10)익사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만원
(11)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12)농기계상해 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3)농기계상해 후유장애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14)가스상해 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15)가스상해 후유장애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기 발생한 경우	1,000만원

2020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0.11.11.) 및 제260회 화천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화 천 군 수 최 문 순 직인생략

화천군 조례 제2552호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의 자문
3. 화천군 수돗물 수질검사 계획수립 자문
4.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수돗물 소비자

3. 관계공무원

4. 화천군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5. 그 밖의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의 회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수처리담당자가 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을 삭제한다.